새정부 정책 진단 보고서

법무법인(유한) 바른

새정부 정책분석 대응팀

May 4, 2022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목 차

- 기업지배구조 ····· 1p
- 컴플라이언스 ····· 6p
- 공정거래 ····· 15p
- 노동 및 중대재해 ····· 20p
- 4차산업 ····· 26p
- 부동산 ····· 30p
- 재건축/재개발 ····· 35p
- 빅테크 금융업 ····· 39p
- 조세 ····· 42p

기업지배구조

1 공약 개요

1. 기업 관련법의 정비

가.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나.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2. 자본시장 선진화

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나.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추진

다.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검토

라.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마.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기업 관련법의 정비

가.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특수관계인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친족범위에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고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어, 특수관계인 관련 계열사 편입신고, 공시 등 각종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계열회사를 포함한 기업 전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창업자로서는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재벌세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본시장 선진화(주주 보호 및 공정한 주식시장제도 조성)

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한 후 이를 상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행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적 분할을 통하여 신설 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절차를 엄격화하고, 모회사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매수청구권 부여 등),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신주인수권 부여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주 권리보호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상장폐지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현금화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상장폐지 단계를 세분화하여, 상장폐지에 따라 대응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부자에 비하여 상장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카카오페이 사례 등과 같이 경영진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매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2020년 3월 중지되었던 공매도가 2021년 5월 다시 부분 재개된 상태이고 조만간 전면 허용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공매도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공매도가 다시 중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대상 공매도 담보 비율은 105%이나 개인 담보 비율 140%를 적용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한이 없지만 개인은 90일로 상환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 운용되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실제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개선 등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 확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1. 기업 관련법의 정비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축소될 경우 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서 벗어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바, 구체적인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통상적으로 자금부족의 상황에 있는 벤처기업으로서는 현재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수의결권 허용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 어느 수준까지 복수의결권이 허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본시장 선진화(주주 보호 및 공정한 주식시장제도 조성)

-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의 신조어가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상태인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등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여 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러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에 따른 반대작용으로서 회사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ex.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의 양적·질적 확대 등). 그러므로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적

절히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윤우
☎ 02-3479-2640
✉ younwoo.ahn@barunlaw.com

변호사 김병일
☎ 02-3479-7575
✉ bikim@barunlaw.com

컴플라이언스

1 공약 개요

1. ESG

- **ESG 일반**
  - ○ 중소·벤처기업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 ▸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 ○ 대기업이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 **환경(Environment)**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 ▸ 산업계 · 학계 ·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 ▸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사회(Society)**
  - ○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

- **지배구조(Governance)**
  -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2. 금융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 내부자들의 대량 장내 매도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 ○ 지분 매매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3. 공정사회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 경제적 공동 관계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
  - ○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재검토,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 단체협약 내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 ○ 친인척 고용 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무효화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 사전 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추진

4. 안전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안전 관리비 등)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안전한 공사 여건 마련
  - ○ 감리자의 감리권, 공사 중지권 보장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 ○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2 구체적 분석

1. ESG

- **ESG 일반**

  ○ 당선인은 ESG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법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 **환경(Environment)**

  ○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2030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NDC를 유지할 것인지 화두가 되었으나,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는 이전 정부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NDC 달성 방법을 달리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선인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폭을 줄일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 새로운 정부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적 쟁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 **사회(Society)**

  ○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을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각 사안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 등 법률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Governance)**

  ○ 당선인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의 주식 지분율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처럼 투자자의 주식 지분 및 의사결정권이 커지면 창업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혁신을 이어나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과 같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창업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주식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대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망한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어 지배주주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경우 유망한 사업부문이 빠져나간 만큼 모회사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 당선인은 이러한 물적분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물적주주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된 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금융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당선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금융 분야 주요 공약은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 개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규정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유관기관 규정, 내부 지침 등 하위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법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들의 연쇄적 개정 역시 예상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정사회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공정한 채용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향후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다의성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제정 가능성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등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관련한 민원제기 및 신고 사례가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 집행 강화가 예상됩니다.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당선인의 위 공약 관련하여 플랫폼 산업의 다양성, 역동성을 감안한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안전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운용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그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및 분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1. ESG

-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의 ESG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에 ESG 경영체계를 갖추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SG 경영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선인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원전 비중을 높일 것을 공약하였기에, 원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전 비중 확대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기존 원전 재개 등 방식으로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선인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방안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사전적인 법 위반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두고 유력 대선후보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전속고발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이 의무고발요청제 등 제도와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양 제도의 기능 조정 등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공약 방향에 따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경우에 비하여 기업 실무에서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오히려 전속고발권 행사 사례 증가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이 2021. 12.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022. 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통과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활동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바 향후 벤처기업법 등 법령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기업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주의 행사 가능한 의결권 수가 달라짐에 따라 벤처기업 주주총회 실무에 변화가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 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기업의 주식 물적분할 요건이 강화되면 물적분할 및 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물적분할 외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자회사 상장 시 우선적 신주인수권 부여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 위 제도를 활용하려는 소액주주들의 법률자문 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

- 자본시장의 모니터링 및 금융 당국의 제재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강화, 회사 내규의 검토 및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따른 정책 변화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정사회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등의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에서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제재 또는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용 및 리스크를 감안할 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분석 및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상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위에 폐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에 관하여도 기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의한 규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한 법률상 쟁점 및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는 법 제정에 따른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규정들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HR 실무에서의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공약 방향에 알맞은 사전적 검토 및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행위 익명 제보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민원 제기 및 신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 시 사전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료 관련한 비밀유지, 권리관계 귀속 등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간 사전 협의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안전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당선인은 산업 및 노동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단시간 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및 법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인 규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분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재웅
☎ 02-3479-5762
✉ jaewoong.choi@barunlaw.com

공정거래

1 공약 개요

1.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정책공약집 63쪽)

2.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정책공약집 108쪽)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정책공약집 108쪽)

4.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정책공약집 108쪽)

5.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정책공약집 108쪽)

6.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정책공약집 109쪽)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 **(AS-IS)**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

- **(TO-BE)**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2.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AS-IS)**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와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

청권 행사에 객관적인 기준과 역할 조정 필요

- **(TO-BE)**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AS-IS)**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 **(TO-BE)**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 추진

4.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AS-IS)**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TO-BE)** 사전 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5.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AS-IS)**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기존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단순 신설 또는 연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 발생

- **(TO-BE)**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6.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 **(AS-IS)**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 가중 및 비용 상승시에도 납품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등 대책 필요

- **(TO-BE)**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회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1.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동일인 관련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라 동일인이 지정 자료 누락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혈족 6촌은 사촌 형제의 손자로 현대사회에서는 생사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먼 친척인 만큼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약에 따라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인척인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대한 현대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조정 논의가 된다면 신속하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관련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는 공약에 따라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예상됩니다. 즉 현행대로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공정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하고 검찰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을 의무고발하도록 하는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중복수사와 이중처벌 등 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요청 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관련

새정부는 공약에 따라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들은 사전적인 법위반 예방 노력과 함께 실제 분쟁 발생시 각종 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 이외에 흔히 갑을(甲乙) 관계를 다루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도 동의의결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관련

갑을(甲乙)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 시스템까지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공정위의 기술유용감시팀의 확대가 예상되고, 대규모의 직권조사 등 공정위의 법 집행 기조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에서 기술탈취 규제를 겹겹이 하고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과 공정위의 중복 조사와 중복처벌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등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5.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인데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이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관련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등장했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 혁신 의지 약화 등 단점이 커 아직 실현한 정부는 없으나, 새정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뒤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과감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외 업체와 손잡을 수 있다는 것과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면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변동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을 대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때만 협상 대행을 허용하는 '10%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시에 수급사업자,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새정부는 공약에 따라 이러한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민원제기나 공정위 신고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특히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신고센터'를 활용), 이에 따라 기업들은 거래대금 결정 및 조정 등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법 집행당국의 강화될 모니터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서혜숙
☎ 02-3479-2395
✉ hyesook.seo@barunlaw.com

변호사 백광현
☎ 02-3479-2497
✉ kwanghyun.back@barunlaw.com

노동 및 중대재해

1 공약 개요

1.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채용 비리 근절

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
-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면 재검토,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국민권익위에 설치
- 상시 단속/점검 강화, 직권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2.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가.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나.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기간제법 개정하여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보장내용 구체화

다.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청년알바에게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만으로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확대

3.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

나.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
-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다. 정규직을 유지하여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조건 조성

-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전환 신청권 부여
- 재택근무제, 텔레워크, 모바일워크 등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

라.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

마.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4.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

가.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노사관계 전문가를 조정담당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노사갈등 조정능력 제고
-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장기화 예방

나.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
- 대기업 집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선도

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 공무원·교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마련을 통해 원활한 노조 활동 보장
-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 확립

5.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가. 연공금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

나.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다.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 임금정보공시 내실화로 직무 중심 노동시장 발달 촉진
-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 확대

6.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

가.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일자리 선택기회 제공
나.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 개선

7.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나.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8.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가.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유도, 순차적 확대)
나. 채용단계: 신규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 공시
다. 근로단계: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라. 퇴직단계: 해고자 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 공시

9.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가.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강화

10.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가.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제1항, 제9항 관련)

공정한 채용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 강화, 단체협약 내에 존재하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는 등 기존 관습적인 제도 중 공정성에 반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근로공시제'를 통하여 채용단계·근로단계·퇴직단계 등 각 단계별로 성비를 공시함으로써 남녀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제3항, 제5항, 제6항 관련)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을 제시하였고,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양(quantity) 보다는 질(quality)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연결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으로 제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4일제 근로도 가능합니다.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자에게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방식 도입,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의 확대, 시간선택형 일자리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기본적으로는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육아를 위한 제도 개선(제7항 관련)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남녀 각각)에서 부부합산 총 3년(남녀 각각 1.5년씩)으로 연장, 육아 재택 근무제도 운영, 근로자의 선택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생의 노사관계(제4항 관련)

노사관계 정책으로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직접투표제, 원·하청으로 구성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사의 참여 및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제

시하고 있으나,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행위 등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절차적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당 법률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채용 관련 불공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이 제정될 경우 다양한 채용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위 법률을 근거로 채용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노동관계에서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성비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이유의 차별분쟁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할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의 불균형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공약대로 근로시간 유연성이 확대·정착되는 경우 노동법계에 고착화 된 '사용·종속성'의 개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육아를 위한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육아 재택 근무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승진, 인사이동 등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위 제도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생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상생'과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는 적극 장려하고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경우 새로운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공약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

목됩니다.

○ 기타 주요 현안 관련(공약집 미반영: 중대재해, 최저임금)

정책공약집에는 담겨 있지 않으나, 선거기간 동안 당선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이슈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해왔던 당선인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적용을 언급하는 등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법률개정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다소 추상적인 시행령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중한 법적용기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된 바 없어 향후 관련 이슈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당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사람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률, 적용범위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정상태
☎ 02-3479-2382
✉ sangtae.jung@barunlaw.com

4차산업(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1 공약 개요

1. 가상자산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재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2. IEO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인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3. 디지털자산청 설립을 통한 (현행 법률상)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4.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NFT 관련 산업 진흥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투자 수익(양도차익)의 5,0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2022. 1. 1.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그 중 22%(기타소득에 대한 세율 20% 및 지방세 2%)를 세금으로 내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약에 따르면 이 공제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아트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와 미술품으로 볼 경우 기본공제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2. 단계적 발행 허용

ICO는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판매대금은 일반적으로 발행주체가 취득하며 발행주체는 그 자금으로 백서에서 약속한 로드맵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이후로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국내 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발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IEO, 즉 거래소를 통해서 최초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ICO를 통해 발행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발행의 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가상자산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IEO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을 통해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직접 발행 및 판매행위는 금지된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IEO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선별 및 관리할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다면 결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권한 확대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감독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불리던 비트코인 등의 자산군은 디지털자산으로 새롭게 분류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된다면 디지털자산의 정의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디지털자산청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역시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 중 논란이 있는 NFT에 대한 법적 성격 분석 및 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증권성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소송 중인 리플의 경우에도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디지털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성질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면 증권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진흥청이 신설될 경우 투자자 보호 관련 업무는 디지털자산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NFT 관련 산업 진흥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공약입니다.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상 현실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서비스 출시 및 이를 위한 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NFT 활용 게임의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NFT를 활용한 P2E게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으로 판단되어서 사실상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향후 P2E 게임의 자유로운 출시와 NFT 경제 활성화를 통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가상자산 발행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개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2. 1. 1.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향후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비가 마쳐질 때까지 과세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 기관들이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도 가상자산 입법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추이 및 디지털자산법 제정 동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ㅁ담당변호사

변호사 최영노
☎ 02-3479-7876
✉ genie7@barunlaw.com

변호사 한서희
☎ 02-3479-2351
✉ suhhee.han@barunlaw.com

부동산

1 공약 개요

1.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 더불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0.5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 및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6.5만 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노선상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2.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 위해 국토부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 낮은 지역에 대한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 확보, 정부는 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
-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3.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킴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등 포함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4.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수준을 높임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축 허용

-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인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5.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 및 보완 장치 마련 통해 임대차 시장 왜곡 시정,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 허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6.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 민간 배정 택지 물량 일부 민간임대주택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7.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권이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하여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이미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층간소음과 주차시설 부족 등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한편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보상 재원, 수익성 등의 문제로 현 정권의 개발추진 방식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오히려 악화되었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이익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였고, 이에 청년, 신혼부부들이 자력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의 주된 내용은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공약의 실천 과정에서 관련 입법 논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행정규칙 내지 각종 고시의 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적율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이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은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실현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요건 완화로 인하여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 또한 아파트 건설사업 분양에서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도 조심스럽게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주헌
☎ 02-3479-2388
✉ joohun.kang@barunlaw.com

재건축·재개발

1 공약 개요

1.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이라는 목표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한다고 밝히고,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택지 공급방식	공급물량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기타(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2. 그 밖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임대차 3법 개정,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걸고, 구체적으로는

- ✓ 2022년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 부동산세금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 ✓ 거래세 개편-양도소득세 개편·취득세 부담 완화
- ✓ 분양가 구성항목인 토지비용, 건축비,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공약

2 구체적 분석

현 정권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부동산 문제라고 본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은 대출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완화입니다.

주택가격의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 부족이라고 보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공급인바, 이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말 발표된 주택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5개**)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진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올해 초 각 당 국회의원들에 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안들이 제정 발의 되어 있는 바, 당선자도 이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4. 1. '부동산TF' 1호 공약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공급을 위한 '원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인 공약인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추진키고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서울시는 인허가를 각각 맡습니다. 당선인이 첫 민생 과제로 부동산 개혁을 정하고 3. 31. 인수위원회 분과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첫 과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과제가 부동산인만큼 국정과제 핵심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쏠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 아파트단지 또는 도심지의 주택공급이므로 그야말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대안이 되어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위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에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 호수밀도, 주민동의율 등 개별 요소를 상세히 점수화하여 70점 이상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를 폐지하고, 이를 단지 참고로만 하겠다고 하여 신규재개발 구역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권한이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어서 취임 직후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현 당선인도 서울시 신통기획의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더 보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터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규제를 완화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의회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선정시기는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지만,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한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서울시의 예를 따라 조례를 변경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향후 전국적인 제도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향후 전망

새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열되는 투기 및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하여 재건축 조합원 자격 취득제한 시기를 안전진단 이후 또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앞당길 것으로 2021. 6. 경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새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상속·해외이주 등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2022. 4.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시점을 '공고 후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근거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강력하게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있는 바,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됩니다.

현재 1기 신도시 개발 모델로 리모델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주택법 개정 영향에 따른 것이며, 1시 신도시의 건축물들이 내구성의 문제등 리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결정권한자가 "시장"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이후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발표가 잇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그 제도의 취지가 달성됩니다. 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특별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 못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개정 변화에도 깊은 관심을 두어야만, 제도의 변경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각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결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정부의 기조에 따라 각 지자체 장들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 속도와 방향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새정부에서도 여전히 숙제이므로 적지 않은 정책 혼선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되며, 실시간 제도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재숙
☎ 02-3479-2421
✉ jaesuk.lee@barunlaw.com

빅테크 금융업

1 공약 개요

1.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2.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제 정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3.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 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음을 감안한 새로운 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업권별 중심의 규율체계에서 서비스(기능) 중심의 규율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기존의 IT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진입규제 정도를 비교하면 IT기업은 너무나도 쉽게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규제의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IT서비스 시장이 훨씬 경쟁이 치열하며 이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IT기업들만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의 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C 웹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회사보다 훨씬 고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회사들이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 공약은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되, 이들 산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기관·유관기관·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다만 시장에서 충분한 지배력을 가지고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대규모 정보통신기술회사(ICT), 소셜미디어, 인터넷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회사 등)이 기존의 앱이나 웹에 금융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행위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이해상충 방지 방안,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규제산업으로 성장해온 반면, IT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하면서 변화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업종의 차이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에도 그대로 배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관리나 소비자보호 등에 조금 덜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융서비스는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및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중 규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업권 규제와 기능 규제 간

의 충돌 문제나 중복 적용 등은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 금융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도형
☎ 02-3479-5735
✉ kdhwin00@barunlaw.com

조세

1 공약 개요

1.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2.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주식양도소득세 폐지)

3.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4.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5. 부동산세제 정상화(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과 변동폭 조정 :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추진)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의 내용 포함)

2.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3.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 상장 유인(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 7년보다 단축)
-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지원을 위한 사전증여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 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시 세제지원으로 확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지원확대)

4.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행)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시 세제 지원**

5. 부동산 세제관련

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 위해 세율 1~3%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의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6.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현재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와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2023. 1. 1.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대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25%가 세금으로 부과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장의2「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부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세제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2%로 낮추고,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며,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20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위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전담 기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TF(태스크포스)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인수위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 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주영
☎ 02-3479-5766
✉ jooyoung.choi@barunlaw.com

변호사 김지은
☎ 02-3479-2371
✉ jieun.kim@barunlaw.com